

부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가단3088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지분에 관하여, ①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4. 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②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9. 7.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16511)을 제기하여 2015. 10. 21. ‘6,312,995원 및 그 중 1,834,484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피고(D생)는 E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F(1965.생, 장녀), C(1967.생, 장남), G(1970.생, 차남)을 두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 부부는 2005. 4. 2. E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주택에 입주한 후 계속 거주하던 중, 2022. 3. 11. E가 사망하였다.

(2) 이에 C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2.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여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2. 5. 19. 접수 제61139호로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무자력 상태이던 C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을 포함한 자녀들이 피고와 ‘부친(피고)이 모친과 함께 오랜기간 살아온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대로 거주하도록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단독상속한 것일 뿐이고, C이 무자력이라거나 위 분할협이가 사해행위가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모두 분할에 이르기까지의 재산적·신분적 기여, 부양 요소, 일방 당사자의 특별한 수익 유무, 분할 후의 관계 등 다양한 고려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점, ②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객관화하거나 수치화·정형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반면, 당사자들에게는 이성적·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함을 갖춘 것들이므로, 특별히 이례적인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③ 부부 또는 친족이 아닌 제3자로서는 그와 같은 분할 결과에 이르게 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이에 따라 민법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하여,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 이상, 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도 부부간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관계, 상속에 있어 법정 상속분 등 일정한 법률상 기준과 다른 내용의 분할협의를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재산 분배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가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즉, ① 상속재산은 특정 상속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실제로 특정 상속인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은 그 상속인 자신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분할하는 사례는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이는 친족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 감정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로서 합리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양보한 상속인의 결단은 미덕으로 칭송되어야 할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한 경우를 모두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채권자 보호의 과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또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상속인의 의사표시는 실질에 있어서 상속포기 또는 일부 포기의 의사표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판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를 감안하면, 우연히 분할협의를 형식으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는 경우 비법률가인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④ 나아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인인 일방 배우자의 기여는 단순히 자녀들에 비해 상속분을 50% 가산하는 것만으로 보상될 수 없고, 자녀들은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생존한 부모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소송대리인 C은 이 법정에서 ‘부친(피고)이 경제활동을 한 소득으로 주택을 매수해 왔으므로 종래에는 부친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등기해 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부친(피고)이 특별히 모친(E)을 배려하여 모친 명의로 등기해 주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나머지 상속인(자녀)들은 부친(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⑤ 또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㉑ 이 사건 부동산(주택)은 피고가 망인과 함께 17년간 거주해 온 피고의 주거지인 점, ㉒ 대부분의 자녀들이 혼인하여 각각의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여전히 위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㉓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모친의 사망 이후 부친(피고)이 기댈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㉔ 위 부동산의 시가가 매우 크다고 하기는 어렵고, C 등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법정 상속분의 경제적 가치도 큰 금액이 아닌 점, ㉕ 부친인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다시 상속받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이익은 실질적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분할협의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므로, C의 상속지분 포기는 특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히려,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하였다면 ‘상속포기’의 안전한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⑦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55세의 나이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나이인 반면, 피고는 77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비록 자식이지만 C의 재산상태 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장남인 C은 연로한 부친의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수치심에서라도 자신의 치부(무자력)를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774.48㎡, 2층 내지 14층 각 759.18㎡, 지하 747.48㎡,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노인정, 1층 172.08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관리

실 147.2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기계실 1층 21㎡ 지하 32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전기실, 기계실 1층 22.8㎡ 지하 1044㎡,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층 펌프실 지하 60㎡,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

실 8.4843㎡,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8.4843㎡,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

층 화장실 8.484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대 48890㎡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84.982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88900000분의 429963 []

